#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

판 결

사건 2023고단1053 업무상횡령

피고인 A

검사 박유나(기소), 이정성(공판)

판결선고 2023. 11. 16.

주 문

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.

다만,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이 유

#### 범죄사실

피고인은 2020. 7.경부터 피해자 B클럽의 대표로서, 위 클럽의 봉사활동 주선, 회원 모집 및 관리, 수입 및 지출 결재, 통장 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.

피고인은 2020. 12.경 위 피해자의 사무장으로부터 장학기금의 재예치를 부탁받고 피해자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, 직인 등을 건네받아 위 기금을 새로운 계좌에 재예치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, 2021. 3. 8.경 원주시 C, D조합 원주지점에서 위 장학기금 중 110,119,833원을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(계좌번호 1 생략)로 이체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.

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.

#### 증거의 요지

- 1. 피고인의 법정진술
- 1.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

- 1. 예금거래내역서(F),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(B클럽), 수신(대월)원장(A), 통장 사본(B클럽 명의 D조합)
- 1. 수사보고서(피의자 신용보고서 첨부), 수사보고서(피의자 금융거래내역 첨부), 수사 보고서(피의자 제출 반환 내역 첨부), 수사보고서(피의자가 대표로 재직한 사실)

## 법령의 적용

-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, 제355조 제1항, 징역형 선택
- 1. 집행유예

형법 제62조 제1항

## 양형의 이유

횡령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지만, 피고인이 횡령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,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,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.

판사 김도형